

['자연재해와 환경영향평가' 2차시 강의자료]

III. 환경영향평가(EIA)

1.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한계

토지이용계획 수단 중 환경영향평가는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그러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재해를 완화하기 위해 개별 개발행위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7)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For those states requiring an impact report prior to permits issuance, this review can be used to ensure that flooding concerns are addressed and mitigation options considered.	Reduce flood damages through mitigating the impact of development
-----------------------------------	--	---

Source: Myer R. Wolfe, et al. (1986)

- 재난완화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미국)
- 재해/환경영향평가 분리 (한국)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입지 및 계획을 적절성을 다루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주로 고려하는 환경영향평가라는 두 가지 제도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성검토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절차 및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1.1 재해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 도입배경

우리나라 풍수해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에 기인하지만, 이 외에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더욱 가중될 것이

한국의 제도적 측면: 환경과 방재

-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검토
-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
- 사업시기/검토대상 동일
- 환경영향평가: 사업자-환경부(환경청)-KEI
- 재해영향평가: 사업지-소방방재청-국립방재연구소

자명하다. 이처럼 재해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것이 19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영향평가제도이다. 그러나 1996년 재해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편법적 개발행위 및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해 보다 광역적인 방재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의 범위는 6개분야 24사업으로 대상의 범위가 모든 개발에 대한 방재계획을 포함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재해영향평가의 내용/폐지이유

- 내용: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사면안정해석, 저감대책(침사지, 저류지 중심)
→ 환경영향평가서내 수질, 수리수문, 지형지질항목에도 포함되는 내용

 - “실시계획단계에서 토목·건축설계내용이 없기 때문에 홍수나 토사, 사면안정 등 재해영향의 실질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
(정부는 홍수나 토사, 사면안정에 대한 방재기준을 제정, 설계 때 적용)
-

현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내용

- 지자체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회구성
 - 검토서의 내용은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와 같음: 여전히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사면안정해석을 중심으로 진행
 - 입지의 적절성을 다루고 있지 못함 → 이유는 홍수범람원 지도 등 정보부족
-

재해/사전재해영향평가

- 19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 재해영향평가 실시
- 2004년 소방방재청 신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05. 8. 17부터 시행
- 2007년부터 재해영향평가를 폐지 예정

2.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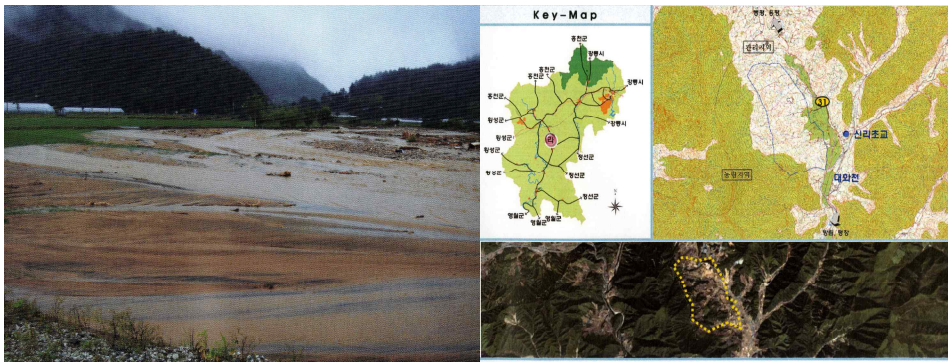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사례 중 도시개발,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에서의 시가화예정용지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수발생가능지역과 홍수가 이미 났던 지역에서 여전히 도시개발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까지도 도시개발이 홍수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 발생 가능한 수해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서 이러한 사업에서의 자연재해방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1)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은 2006년 여름 수해로 인하여 6천억 이상의 홍수 피해를 겪은 지역이다. 그러나 2007년 상반기에 작성된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여러 지역이 홍수터 및 그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대화면 신리의 경우 2,944m²에 2011~2015년까지 제 1단계 첨단 바이오

연구·교육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대화천 북서쪽에 인접하고 있어 홍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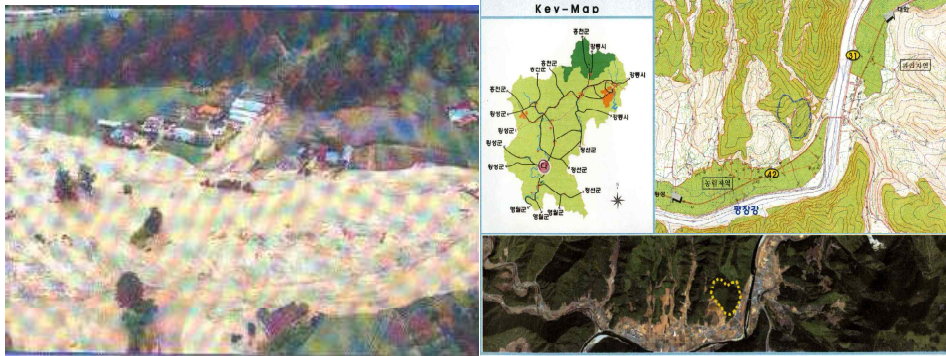


<그림 3-1> 대화면 대화천 범람(2006년 7월 홍수피해, 강원도 평창군)

또한 평창군은 진부면 송정리 일원에 총 661㎡의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원주~강릉간 철도건설계획에 따라 진부역사 조성계획으로 도시화가 예상되는바 평창군은 송정리 일대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진부면 자체가 2006년 7월의 호우로 인해 총 276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총 1,887명의 이재민이 큰 곤란을 겪었다(<그림 3-2> 참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홍수발생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하겠다.

진부면과 대화면 외에도 평창군은 방림면 방림리 일원에 총 86㎡의 방림농공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2011~2015년에 걸쳐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데, 지역 생산물을 이용한 가공, 제조업체 유치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방림면 일대 역시 호우피해로 인해 과거 큰 재산손실을 겪은 지역이라는 데 있다. 평창강이 구포교와 만나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방림리 일대야 말로 홍수를 대비한 저감방안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이는 자연재해와 그에 따르는 인명 및 재산손실을 무시한 무분별



<그림 3-2> 진부면 송정리 범람(2006년 7월 홍수피해, 강원도 평창군)

한 도시개발 사례라고 보인다.



<그림 3-3> 방림면 구포교 범람 전경(2006년 7월 홍수피해, 강원도 평창군)

2)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 계획

진주시는 최근 2021년 진주시 도시 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로 평거 4지구를 지정하였다. 2007년 계획되고 있는 평거 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면적 482,050㎡에 주거용지만 254,321㎡를 차지하고 있다.



본 사업지구는 얼핏 판단하기에는 진양호 댐 아래 위치해 있어 홍수위험이 적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그림 3-4> 참조).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극히 위험한 도시개발사업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충적토로 이루어진 홍수터로 판단되며, 댐 붕괴 및 범람 발생으로 재해피해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뉴올리온즈는 제방(댐)이 무너짐으로써 약 2000억 달러(약2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평거 4지구 도시개발 계획은 홍수위험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된다.